

## SGA에서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관한 연구\*

민 주 희\*\*

- 
- I. 서 론
  - II. 제12조 제1항에서의 권리적합의무
  - III. 제12조 제2항에서의 권리적합의무
  - IV. CISG에서의 권리적합의무와의 비교
  - V. 결 론
- 

주제어 : SGA, 권리적합의무, CISG

### I. 서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권리적으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매도인의 주된 의무 중 하나이다. 매도인이 권리적합의무를 이행 했는지의 여부는

---

\* 본 연구는 2013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신진)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계약상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될 것인데 국제적 통일법규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하 CISG로 칭함)이 계약의 준거법인 경우 제41조와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물품적합의무에 치중되어 왔고 제41조와 제42조의 권리적합의무에 대한 연구<sup>1)</sup>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술도입계약이 증가하면서 권리침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국물품매매법(이하 SGA로 칭함)에서의 권리적합의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EU간의 FTA체결로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영국은 CISG를 비준하고 있지 않다. 영국 거래 상대방과 계약체결 시 국제적 통일법규인 CISG를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 SGA를 준거법으로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GA에서의 권리적합의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CISG에서의 규정과 비교고찰을 통해 법제들간의 차이를 제시하여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에 있어 그들의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 II. 제12조 제1항<sup>2)</sup>에서의 권리적합의무

### 1.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

- 
- 1) 사동천, “국제물품매매법상 권리의 계약부적합에 관한 연구”, 법조, 제51권, 2002; 강용수, 허광욱,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권리적합성에 관한 연구 -UN협약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18권, 2005; 김인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묵시적 품질의무”, 비교사법, 제14권, 2007; 허광욱, “CISG 제42조 (1)항의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소고”, 무역상무연구, 제60권, 2013.
  - 2) SGA s 12 (1) In a contract of sale, other than one to which subsection (3) below applies, there is an implied term on the part of the seller that in the case of a sale he has a right to sell the goods, and in the case of an agreement to sell he will have such a right at the time when the property is to pass.

제12조 제1항에서는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in 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sup>3)</sup> 매도인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조건(implied condition)<sup>4)</sup> 규정하고 있다.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를 한정하는데 혼란이 발생한다. 제2조 제1항에서는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소유권(the property)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는 소유권은 단순히 특수한 소유권(a special property)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소유권(a general property)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5)</sup> 이들 규정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일반적 소유권(a general property)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일반적 소유권(a general property)이 없거나 그러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가 없는 것이다.<sup>7)</sup>

3) SGA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 미래에 이루어지거나 미래에 어떤 조건(condition)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4) SGA에서 계약조항을 조건(condition)과 담보(warranty)로 구분하고 있다. SGA 제11조에 의해 조건(condition)은 계약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의 위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반면 SGA 제61조에 따르면 담보(warranty)는 조건(condition)에 비하여 덜 중요한 합의로서 이에 대한 위반시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매도인이 조건(condition)에 대한 위반을 행하였으나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물품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그는 조건(condition)을 담보(warranty)로 취급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유일한 구제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된다.(Teija Poikela, "Conformity of Goods in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2003, p. 26; 김철수, "영국계약법상 조건, 담보 그리고 중간조항", 해사산업연구소논문집, 제15권, 2004, p. 10)

5) 일반적 소유권(a general property)을 물품에 대한 완전지배권으로 해석하므로 제한적 지배권을 뜻하는 특수한 소유권(a special property)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운임이 미지급 상태에 있는 경우 운송인이 행사할 수도 있는 유치권이 특수한 소유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장영준, *신무역용어사전*, 학문사, 1995, p. 97)

6) P.S. Atiyah, J.N. Adams, H. MacQueen, *Atiyah's Sale of Goods*, Pearson, 2010, p. 108.

Niblett v Confectioner's Materials Co Ltd 사건<sup>8)</sup>에서 미국 매도인은 3,000개의 저장 처리된 우유(tinned milk)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인도된 우유의 3분의 1 이상이 영국의 유명한 회사의 'Nissly'라는 브랜드 라벨을 부착하고 있었다. 이 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우유는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세관에 압류되었고 매수인은 이 라벨을 제거하여야만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매수인은 그 라벨을 제거하여 수입하였고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우유를 판매하였다. 법원은 물품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으로 판매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인도로 인한 매도인의 법 위반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의 사용,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매도인이 판매할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sup>9)</sup>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을 인도한다면 매도인이 보유한 소유권보다 존중되어야 할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매수인의 물품 처분을 방해하므로 매도인은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sup>10)</sup>

결국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물품 사용 또는 처분을 방해하는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한편 Great Elephant Corp v Trafigura Beheer BV 사건<sup>12)</sup>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적시 소유권이 이전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유를 판매하였다. 나이지리아 원유규정에 따르면 수출신고수리 후 원유를 적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신고수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의 적재가 시작되었고 원유가 적재되는 동안 나이지리아 석유부(DPR)는 수출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2009년 9월 1일 본선적재 완료 후, 석유부(DPR)에서는 통관완료 후 원유를 적재해야

7)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2010, p. 180.

8) [1921] 3 KB 387.

9) M Bridge, *op. cit.*, p. 181.

10) [1921] 3 KB 387.

11) *Microbeads AG v Vinhurst Road Markings Ltd* [1975] 1 WLR 218.

12) [2012] EWHC 1745(Comm)

하는 규정을 어긴 것과 운송서류의 부재를 이유로 같은 날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고 9월 7일에 본선의 출항을 저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에서 나이지리아 석유부(DPR)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석유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으나 수출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석유부(DPR)는 이러한 권리를 석유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행사 하였다. Niblett v Confectioner's Materials Co Ltd 사건에서 매도인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매수인의 물품 사용 및 처분에 방해할 일으키므로 매도인은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가 없다고 판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석유부(DPR)의 수출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권리는 매도인이 보유하는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석유부(DPR)의 행위는 물론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만, 매도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석유부(DPR)의 권리 행사가 매도인으로 하여금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매도인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상황에 의해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하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 매도인이 제12조 제1항에 의한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가 없었으나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제12조 제1항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의 위반이 발생하는가?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 없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도,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면 제12조 제1항에 대한 계약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sup>13)</sup>

## 2.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의 존재를 판단하는 시기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의 경우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물품을 판매하기

---

13) [1921] 3 KB 387.

로 한 계약의 경우(in 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 매도인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14)</sup>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는 언제인가? SGA에서 특정물(specific goods)의 소유권이전 시기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sup>15)16)</sup> 선적시, 선하증권 제공시, 혹은 대금지급 시 등 계약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 소유권이전시기가 결정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규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을 유보하고자 할 텐데<sup>17)</sup>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로 대금지급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sup>18)</sup> 즉, 매수인의 대금지급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도하였다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혹은 장래에 대금을 지불할 의도로 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은 그 때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것을 의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sup>19)</sup>

예를 들어, 기한부지급조건으로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sup>20)</sup>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판매하

14) M Bridge, *op., cit.*, p. 182.

15) SGA 제17조 제1항.

16) SGA 제18조에서는 소유권이전시기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규칙은 인도 가능한 상태에 있는 특정물의 무조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물품의 소유권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2규칙은 특정물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로 두기 위하여 매도인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행위를 하고 매수인이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제3규칙은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특정물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을 확정하기 위해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중량, 용적의 측정, 검사 기타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행위가 완료되고 매수인이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SGA 제19조 제1항.

18) M Bridge,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356,

19) The Prinz Adalbert [1917] A.C. 586.

20)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p. 182.

기로 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할 권리를 매도인이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2조 제1항에 대한 계약위반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sup>21)</sup> 다만 소유권이 이전될 때(대금지급 시)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지 않게 될 것이 명백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제12조 제1항에 대한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sup>22)</sup>

한편,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일지라도 항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arber v NWS Bank Plc사건<sup>23)</sup>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차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계약체결 시 매도인은 차에 대한 소유권(sole property)을 가지고 있음을 담보하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는 때에 차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될 것임이 계약에 명시되었다. 이와 같이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에서(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계약체결시에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an express undertaking)하였다면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물품에 대한 소유자일 것을 의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계약 체결당시에 물품에 대한 소유자임을 보증한 것이라고 판시되었다.<sup>24)</sup> 따라서 이러한 명시적 보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일지라도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당시에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제12조 제1항에 대한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sup>25)</sup>

### 3. 매도인의 인지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의 경우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리

---

21) *Ibid.*

22) *Ibid.*

23) [1996] 1 W.L.R. 641.

24) *Ibid.*

25) *Ibid.*

나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을 판매할 권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허위의 의사표시(misrepresentation)를 하였다면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발생한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사유를 입증한다면 매도인은 계약위반에 이르지 아니 할 것이다.<sup>26)</sup>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in 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논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in 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 계약체결 시에 그러한 권리가 없을지라도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러한 권리를 매도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였는지의 여부는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의 경우에 매도인의 계약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나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in 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에는 계약위반의 판단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 Ⅲ. 제12조 제2항<sup>27)</sup>에서의 권리적합의무

#### 1. 제12조 제2항 a호

제12조 제2항 a호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계약체결 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

---

26)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p. 194.

27) SGA s 12 (2) In a contract of sale, other than one to which subsection (3) below applies, there is also an implied term that (a) the goods are free, and will remain free until the time when the property is to pass, from any charge or encumbrance not disclosed or known to the buyer before the contract is made and (b) the buyer will enjoy quiet possession of the goods except so far as it may be disturbed by the owner or other person entitled to the benefit of any charge or encumbrance so disclosed or known.



로부터 물품이 자유롭거나 자유로울 것이어야 하는 담보(warranty)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28)</sup> 여기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란 소유권(a proprietary right) 혹은 유치권 및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a possessory right)을 의미한다.<sup>29)</sup>

물품에 대한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가 계약체결 시에 드러나거나 알려졌을 경우에 매도인에게 담보(warranty)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Athens Cape Naviera S.A. v Deutsche Dampfschiffahrtsgesellschaft Hansa Aktiengesellschaft 사건<sup>30)</sup>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박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모든 담보와 선박우선특권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것(free from all encumbrances and maritime liens)”을 명시적으로 보증하였다. 그러나 계약체결 전에 매도인에게 채무가 있었고, 매수인과의 계약체결 후에 매도인의 채무 이행을 위해 법원은 매매목적물인 선박에 대한 압수명령을 내렸다. 매도인의 채권자는 매도인이 매수인과 계약체결 할 당시 매매목적물인 선박에 대한 어떠한 담보도 선박우선특권도 없었고, 법원의 집행 명령 또한 매도인이 계약 체결한 이후에 행하여졌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에게 채무가 있었더라도 선박을 압수하는 것이 매도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매매목적물인 선박에 대한 압수명령)는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에서의 “모든 담보와 선박우선특권(all encumbrances and maritime liens)”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명시적 보증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되었다.

한편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드러나거나 알려진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가 있고 이로 인해 매매목적물이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않는 경우 이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의무위반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sup>31)</sup> 이는

---

28) 제12조 제1항은 조건(condition)으로 다루어지고 제2항은 담보(warranty)로써 취급한다. 제1항의 조건(condition)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과 제2항의 담보(warranty)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은 달라질 것이다.

29) Athens Cape Naviera S.A. v Deutsche Dampfschiffahrtsgesellschaft Hansa Aktiengesellschaft [1985] 1 Lloyd's Rep. 528; P.S. Atiyah, J.N. Adams, H. MacQueen, *op., cit.*, p. 115;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p. 195.

30) [1985] 1 Lloyd's Rep. 528

31)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p. 198.

매수인이 계약체결 전에 물품에 대한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담보가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제12조 제2항 b호

제12조 제2항 b호는 드러나거나 알려진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에 대한 권한이 있는 소유자나 제3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quiet possession)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하는 담보(warranty)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권(quiet possession)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 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 효력을 발휘한다.<sup>32)</sup> 그러나 매수인이 물품을 소비하였을 때, 예를 들어 매매목적물을 전매(resale)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완전한 점유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의무는 중단 된다.<sup>33)</sup>

### 1) 점유권(quiet possession)을 행사하는데 방해받았는지의 판단 시기

계약체결 당시 혹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제3자가 매수인의 물품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하는데 방해한다면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하는가?

Microbeads AG v Vinhurst Road Markings Ltd사건<sup>34)</sup>에서 스위스 매도인과 영국 매수인은 도로 흰색선 만드는 기계(road-making equipment)의 매매 계약을 1970년 1월에 체결하고 4월에 인도하였다. 그 후 1972년 제3의 영국 회사가 그 기계에 대한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매수인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 영국회사는 도로선 만드는 기계에 대하여 1966년 11월에 특허신청을 하였고 1970년 11월에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첫째,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2) *Ibid.* p. 196.

33) M Bridge, *The Sale of Goods*, p. 194.

34) [1975] 1 WLR 218.

매도인은 직접 도로 흰색선 만드는 기계(road-making equipment)를 제작하였으므로 1970년 1월 계약체결 당시 물품대한 권리를 소유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즉 법원은 제12조 제1항에 의한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제3자가 매수인의 점유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계약위반을 발생시키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매수인의 점유권은 장래를 향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매수인이 물품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의 영국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기초로 1972년에 매수인을 향하여 물품의 사용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매수인의 점유권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제12조 제2항 b호에 대한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있다고 판시되었다. 한편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계약체결 당시 제3자의 특허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3의 영국회사의 특허권 또한 계약체결일자보다 2년 후에 획득한 것이므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없다고 반론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다할지라도 물품이 특허권 침해로 인해 매수인이 물품을 계속해서 점유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면 매도인은 담보(warranty)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매도인이 계약체결 당시 혹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라도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혹은 그러한 때에 제3자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후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할 수 없게 된다면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매수인의 점유권(quiet possession)이 언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이해관계(an interest)를 가질 때까지 매도인이 담보(warranty)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sup>35)</sup> 예를 들어 매수인이 전매(resale)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거래상대방인 후속 매수인(a sub-buyer)의 점유권까지 보증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매수인의 점유권을 담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종료된다.<sup>36)</sup>

---

35) M Bridge, *The Sale of Goods*, p. 194.

36) *Ibid.*

## 2) 합법적인 제3자의 권리행사

제3자의 권리주장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점유권을 행사하는데 방해를 받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가? 모든 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warranty)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제3자의 권리주장이 합법적이고 그로 인해 매수인의 점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존재하나, 제3자의 부당한 행위(wrongful acts)에 의해 매수인이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논하지 않는다.<sup>37)</sup> Great Elephant Corp v Trafigura Beheer BV사건<sup>38)39)</sup>에서 2009년 9월 1일 원유를 본선적재 완료 후, 석유부(DPR)에서는 통관완료 후 원유를 적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과 운송서류의 부재를 이유로 같은 날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9월 7일에 본선이 나이지리아를 출항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벌금을 부과하였다. 나이지리아 석유부(DPR)의 행위가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석유부(DPR)의 행위가 합법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통관완료 후 원유를 적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과 운송서류의 부재를 이유로 석유부(DPR)가 수출신고수리를 취소시킨 행위와 그로 인하여 나이지리아 항구를 출항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내려져야 하는 것으로 석유부(DPR)의 벌금 부과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석유부(DPR)의 합법적인 행위에 의해 매수인의 점유권이 침해를 받은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는 매도인의 담보(warranty)책임 위반이 존재하나 9월 7일 이후 발생한 매수인의 점유권 침해는 석유부(DPR)의 정당한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없다고 판시되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주장이 매도인의 동의 하에 혹은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도인은 담보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sup>40)</sup> The Playa Larga사

37) P.S. Atiyah, J.N. Adams, H. MacQueen, *op., cit.*, p. 116; Niblett v Confectioner's Materials Co Ltd [1921] 3 KB 387.

38) [2012] EWHC 1745(Comm)

39) 사건개요는 36쪽에서 언급하고 있다.

40)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p. 197.

건<sup>41)</sup>에서 쿠바 매도인과 칠레 매수인은 설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설탕을 적재한 선박이 목적항에서 설탕의 일부를 양하 하였을 때 쿠바정부가 칠레에 설탕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C & F조건으로 매수인은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쿠바정부는 목적항에서 설탕이 적재된 선박의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이 쿠바정부와 결탁하여 설탕을 적재한 선박의 철수명령이 내려지게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매도인이 제3자(쿠바정부)와 결탁하여 매수인이 물품에 대하여 점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기 때문에 쿠바정부의 행위가 합법적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의무의 위반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3. 제12조 제1항과 제2호의 비교

첫째, SGA 제12조 제1항은 조건(condition)으로, 제12조 제2항은 담보(warranty)로 취급된다. 이는 조건위반과 담보위반의 효과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조건위반의 경우 물품수령 거절 및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으나 담보위반의 경우 조건위반에 따른 물품수령 거절 및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만을 허용한다.

둘째, SGA 제12조 제1항은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권리적합의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만 제12조 제2항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든 또는 후이든 상관없이 매수인의 점유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sup>42)</sup>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제3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함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고 가정해 보자. 매도인은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1항에 의한 계약위반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제12조 제2항 b호에 의한 계약위반을 범하게 될 것이다.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의 권리자(매도인)는 계약체결 시에 판단되지만 제12조 제2항 b호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매수인이 점유권을 행사하는데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1) [1983] 2 Lloyd's Rep 171.

42)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p. 200.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을지라도 제3자의 합법적 행위에 의해 즉,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부여된 특허권에 기초하여 제3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여 매수인의 점유권이 방해를 받는다면 매도인은 계약위반에 이르게 된다.<sup>43)</sup>

## IV. CISG에서의 권리적합의무와의 비교

### 1. 권리적합의무의 적용 범위

#### 1) CISG

CISG는 권리적합성에 관하여 제41조<sup>44)</sup>에서 매도인이 물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혹은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제42조<sup>45)</sup>에서 물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권리 혹은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의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41조의 적용 대상인 물권은 소유권, 유치권, 질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를 기초로 제3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매수인의 물품 사용, 취득, 처분에 제한을 가하여 매매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므로 제41조에 의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판단될 것이다.<sup>46)</sup> 한편 제42조에서는 적용 대상

---

43) *Ibid.*

44) CISG 제41조 :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인수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45) CISG 제42조 : (1) 매도인은 계약체결시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에 의한 지적재산권에 기초하여야 한다. (a)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임을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시에 예상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전매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될 그 국가의 법, 또는 (b)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 (2) 전항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이 이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b) 이러한 권리 또는 클레임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적 설계, 디자인, 공식 또는 기타의 명세를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ISG의 입법초기에 WIPO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를 고려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할 듯 하다.<sup>47)</sup> WIPO의 제2조에서 지식재산권은 ①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②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③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④과학적 발견 ⑤의장 ⑥등록상표 ⑦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다른 협약의 정의와 비교해 볼 때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 2) SGA

CISG에서 물권과 지식재산권을 기초로 권리적합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과 달리 SGA에서는 물권과 지식재산권을 구분하여 권리적합의무를 규정하지 않는다. 제12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를 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의무를, 제12조 제2항에서는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와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quiet possession)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SGA에서 계약조항을 조건(condition)과 담보(warranty)로 구분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물권 혹은 지식재산권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리적합의무가 계약 조항에서 조건(condition)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담보(warranty)로 해석되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 2. 매도인의 인지

### 1) CISG

제42조에서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knew or

---

46) Stefan Kröll,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H. Beck, 2011, p. 637.

47) Allen M Shinn, "Liabilities under Article 4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1993, p. 122.

could not have been unaware)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에 대해서만 매도인에게 권리적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인지하지 못한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제3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권리적합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의 침해여부는 속주주의를 따르므로 모든 국가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제42조는 매도인이 예견 가능한 한도 내에서 매도인에게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sup>48)</sup> 그러나 제41조의 권리적합의무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계약체결 시에 물권에 기초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클레임이 존재하는지 매도인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가 자신의 물권에 기초하여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적합의무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2) SGA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41조와 제42조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CISG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권리적합의무의 경우에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인지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권리상 하자 없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과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SGA에서는 조건(condition)에 해당하는 제12조 제1항과 담보(warranty)에 해당하는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12조 제1항에서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의 경우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sup>49)</sup> 즉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의 경우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여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품을 인도할 것이라는 계약목적 및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 이행의 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2조 제2항 a호에서는 제12조 제1항과는 관점이 달라지는 듯 하다. 물품

48)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 661.

49)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p. 194.



에 대한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가 계약체결 시에 드러나거나 알려졌을 경우에, 즉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 매도인에게 담보(warranty) 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드러나거나 알려진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가 있다면, 매수인은 그러한 담보가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제한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인은 권리적합의무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sup>50)</sup> 즉 CISG처럼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 3. 합법적인 제3자의 권리행사

#### 1) CISG

제3자의 클레임이 물권 또는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합법적으로 행사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제3자의 클레임이 어떠한지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sup>51)</sup> 제3자의 클레임이 합법적이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그 클레임을 방어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매수인을 그로 인해 매매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데 방해받기 때문이다.<sup>52)</sup> 따라서 매도인은 제3자의 클레임이 합법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매수인이 물품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SGA

CISG와 달리 SGA에서는 모든 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제3자의 권리주장이 합법적이고 그로 인해 매수인의 점유권이 침해된 경우에 매도인의 책임이 존재하나, 제3자의 부당한 행위(wrongful acts)에 의해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할 수

50) *Ibid.*, p. 198.

51) Secretariat Commentary, Art. 41, para 3; Stefan Kröll, *op.*, *cit.*, p. 639.

52) Stefan Kröll, *op.*, *cit.*, p. 639;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p. 387.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을 논하지 않는다.<sup>53)</sup> 그러나 제3자의 권리주장이 매도인의 동의 하에 혹은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도인은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sup>54)</sup>

## V. 결 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권리적합의무는 매도인의 주된 의무 중 하나이다. 계약 당사자들이 SGA를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권리적합의무가 계약상 조건(condition)에 해당하는지 담보(warranty)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제12조 제1항은 조건에 대하여, 제2항은 담보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리적합의무의 이행여부 및 불이행에 따른 구제권이 조건인지 담보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은 조건(condition)으로서 물품매매계약(the case of a sale)의 경우 계약체결시에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를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in the sale of an agreement to sell) 매도인은 소유권이 이전될 때 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즉 계약의 종류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을 판매할 권리(a right to sell the goods)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기가 달라지므로 계약의 종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일지라도 계약체결 시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증(an express undertaking)하는 경우 물품매매계약으로 간주한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항은 담보(warranty)로서 a호에서는 물품에 대한 어떠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가 계약체결 시에 드러나거나 알려졌을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그러한 담보(any charge or encumbrance)로부터 물품이 자유롭거나 자유로워야 함을 규정하고, b호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점유

53) P.S. Atiyah, J.N. Adams, H. MacQueen, *op., cit.*, p. 116: *Niblett v Confectioner's Materials Co Ltd* [1921] 3 KB 387.

54)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p. 197.

(quiet possession)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a호에 의하면 계약체결 시에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인이 인지하여야 하지만 b호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그러한 제3자의 권리를 인지하였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b호에서 매수인의 점유권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상실한 때까지 매도인이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호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제3자의 권리를 인지하여야 한다.

한편 제3자의 권리주장이 합법적이고 그로 인해 매수인의 점유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매도인의 담보(warranty)책임을 논하므로 제3자의 권리주장이 부당한 행위(wrongful acts)에 근거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권리적합의무의 위반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용수, 허광욱,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권리적합성에 관한 연구 -UN협약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18권, 2005.
- 김인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묵시적 품질의무”, 비교사법, 제 14권, 2007.
- 김철수, "영국계약법상 조건, 담보 그리고 중간조항", 해사산업연구소논문집, 제15권, 2004.
- 사동천, “국제물품매매법상 권리의 계약부적합에 관한 연구”, 법조, 제51권, 2002.
- 장영준, 신무역용어사전, 학문사, 1995
- 허광욱, “CISG 제42조 (1)항의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소고”, 무역상무연구, 제 60권, 2013.
- Allen M Shinn, "Liabilities under Article 4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1993.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 M Bridge, Benjamin's Sale of Goods, Sweet & Maxwell, 2010.
- \_\_\_\_\_,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The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P.S. Atiyah, J.N. Adams, H. MacQueen, Atiyah's Sale of Goods, Pearson, 2010.
- Stefan Kröll,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H. Beck, 2011.
- Teija Poikela, "Conformity of Goods in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2003.

## ABSTRACT

### A Study on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of Goods under SGA

Min, Joo Hee

This study examines the seller's liability for defects in title of goods under SGA. If the contracting parties choose SGA as a governing law,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whether a contractual stipulation for defects in title of goods is a condition or a warranty. It is because SGA divides contractual terms into a condition and a warranty. And its effect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or a warranty are different.

Under SGA s 12(1) as a condition, in a contract of sale, the seller has a right to sell the goods at the time of contract, and in the case of an agreement to sell, he will have such a right at the time when the property is to pass.

Under SGA s 12(2) as a warranty, there is an implied warranty that (a) the goods are free, and will remain free until the time when the property is to pass, from any charge or encumbrance and (b) the buyer will enjoy quiet possession of the goods as long as the buyer retains an interest in the goods. But the seller will not be liable if the third party unlawfully interferes with the buyer's possession.

Key Words : SGA, Defects in Title, CISG